

# 쌍용 더 플래티넘 오시리아 소득기준 및 소득증빙서류 [신혼부부 특별공급]

The  
**PLATINUM**  
쌍용 더 플래티넘 오시리아

## I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

소득기준 공급유형	소득 적용기준	월평균 소득기준 비율	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
	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우선공급 (기준소득 50%)	외벌이	100% 이하	6,030,160원	7,094,205원	7,094,205원	7,393,647원	7,778,023원	8,162,399원
	맞벌이	100% 초과 ~ 120% 이하	6,030,161원~ 7,236,192원	7,094,206원~ 8,513,046원	7,094,206원~ 8,513,046원	7,393,648원~ 8,872,376원	7,778,024원~ 9,333,628원	8,162,400원~ 9,794,879원
일반공급 (상위소득 20%)	외벌이	100% 초과 ~ 140% 이하	6,030,161원~ 8,442,224원	7,094,206원~ 9,931,887원	7,094,206원~ 9,931,887원	7,393,648원~ 10,351,106원	7,778,024원~ 10,889,232원	8,162,400원~ 11,427,359원
	맞벌이	120%초과 ~ 160% 이하	7,236,193원~ 9,648,256원	8,513,047원~ 11,350,728원	8,513,047원~ 11,350,728원	8,872,377원~ 11,829,835원	9,333,629원~ 12,444,837원	9,794,880원~ 13,059,838원
소득기준 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 충족) (추첨제 30%)	외벌이	140%초과	8,442,225원~	9,931,888원~	9,931,888원~	10,351,107원~	10,889,233원~	11,427,360원~
	맞벌이	160%초과,	9,648,257원~	11,350,729원~	11,350,729원~	11,829,836원~	12,444,838원~	13,059,839원~

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384,376) \* (N-8), 100% 기준}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
※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(만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(단, 세대원의 실종·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).

※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: 근무월수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(21번)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,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
※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. (단,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)

## I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 서류

※ 추가서류는 대상에 해당되는 당첨자의 경우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[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)]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/세무서
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	
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①,② 해당직장
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	
자영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     ② 사업자등록증	① 세무서
	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②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(매입, 매출 기재된 부분) ③ 사업자등록증	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
	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②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 (매입, 매출 기재된 부분) ③ 사업자등록증	
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    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	① 세무서    ② 등기소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(원본)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(직인날인)	① 해당직장 / 세무서 ②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*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* 행정복지센터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*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(직인날인)	* 해당직장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※1)의 경우 ②전년도 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을 반드시 제출 1) 전년도 소득이 없고,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. 2)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,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.	① 견본주택 비자 ② 국세청 흠탕스
기타(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)	① 출산 전 · 후 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(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) ②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 [재직증명서 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서류 제출]	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

※ 상기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